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 번호	143
----------	-----

발의연월일 : 2019년 6월 7일

발 의 자 : 박찬원 의원

찬 성 자 : 이주웅, 지광천
심현정, 전수일
이명순 의원

1. 주 문

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중요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심사기간은 2019년 6월 11일, 1일간으로 한다.

2. 제안이유

가. 장문혁 의원이 발의한 「평창군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지원
조례안」, 평창군수가 제출한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외 10건 등, 총 12건의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위원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함.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가. 「지방자치법」 제56조

나.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심 사 제 획

1. 활동목적

-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 및 신속한 의사진행
- 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2. 심사안건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 평창군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지원 조례안
-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 평창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농업기반시설물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활동기간

- 2019년 6월 11일부터 6월 14일까지로 한다.

4. 구성

- 이주용 의원, 박찬원 의원, 지광천 의원, 심현정 의원, 전수일 의원
이명순 의원

5. 운영계획

일시	차수	내 용	비고
2019. 6.11 (화)	제1차 조례특위 (13:30)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평창군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지원 조례안 4.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평창군 마하생태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6. 평창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7.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평창군농업기반시설물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평창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56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설치) ① 평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의회 본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의회는 예산안 및 결산의 심사를 위하여 의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예산안 관련 안건(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말한다)의 심사를 포함한다.

③ 의회는 의원윤리 및 징계·자격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④ 위원회는 본회의의 승인을 받은 기간 내에 활동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위원회에서 심사 등을 한 안건 등이 본회의에서 의결 또는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